

37. 폴란드(Poland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7년(월급 근로자), 1933년(임금 근로자)
- 현행법 : 1990년(농민); 1997년(연금기금); 1998년(사회보험제도, 1999년 시행); 1998년(사회보험기금); 2003년(사회연금), 2004년(개인연금계좌); 2008(노령연금); 2016(사회보험기금연금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, 명목확정기여제도(NDC), 개인계좌제도(노령급여), 사회보험제도(장애 및 유족급여), 사회부조제도
 - ※ 1999년 사회보험제도(부과방식)가 명목확정기여제도(NDC)로 대체됨. 1949.1.1. 이전 출생한 가입자는 사회보험제도(부과방식)에 가입됨. 1949.1.1.~1968.12.31. 출생한 가입자는 신제도(NDC)만 가입하거나 또는 NDC 및 개인계좌 구성된 제도에 가입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. 2013.12.31.까지 1968.12.31.이후 출생자는 개인계좌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었음. 2014.2.1.부로 모든 가입자가 개인계좌 임의가입 가능

3.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모든 경제 활동자 (임의가입 가능)
- 특별제도 : 농민, 군인, 경찰
- 사회부조제도 : 폴란드 거주자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 : 기준소득의 9.76%(노령)+1.5%(장애, 유족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은 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국가 월 소득 (2017년 : 4,271.51 zlotys)의 30배
 - NDC : 기준소득의 9.76%(노령)+1.5%(장애, 유족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은 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국가 월 소득 (2017년 : 4,271.51 zlotys)의 30배
 -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의 12.22%는 NDC주계좌에, 7.3%는 NDC부계좌에 입금

- NDC 및 개인계좌
 - NDC : 기준소득의 6.84%(노령)+1.5%(장애, 유족)
 - 개인계좌 : 기준소득의 2.92%(노령)+보험료의 최대 1.75% (연회비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은 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국가 월 소득 (2017년 : 4,271.51 zlotys)의 30배
 -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의 12.22%는 NDC 주계좌에, 7.3%는 NDC 부계좌에, 2.92%는 개인계좌에 입금
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제도 : 신고 기준소득의 19.52%(노령)+8%(장애, 유족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은 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국가 월 소득 (2017년 : 4,271.51 zlotys)의 60%
- NDC : 신고 기준소득의 19.52%(노령)+8%(장애, 유족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 없음
 - 자영자 보험료의 12.22%는 NDC 주계좌에, 7.3%는 NDC 부계좌에 입금
- NDC 및 개인계좌
 - NDC : 신고 기준소득의 16.6%(노령)+8%(장애, 유족)
 - 자영자 보험료의 12.22%는 NDC 주계좌에, 4.38%는 NDC 부계좌에 입금
 - 개인계좌 : 신고 기준소득의 2.92%(노령)+보험료의 최대 1.75% (연회비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은 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국가 월 소득 (2017년 : 4,271.51 zlotys)의 60%
- 사회부조제도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임금지급총액의 9.76%(노령)+6.5%(장애, 유족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은 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국가 월 소득 (2017년 : 4,271.51 zlotys)의 30배
 - 사용자는 특정 위험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 임금지급총액의 1.5%를 추가로 납부 (노령 가교연금 재원)
- NDC : 임금지급총액의 9.76%(노령)+6.5%(장애, 유족)
 -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의 12.22%는 NDC주계좌에, 7.3%는 NDC부계좌에 입금
- NDC 및 개인계좌
 - NDC : 임금지급총액의 9.76%(노령)+6.5%(장애, 유족)

-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의 12.22%는 NDC 주계좌에, 7.3%는 NDC 부계좌에, 4.38%는 개인계좌에 입금
- 개인계좌 : 없음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은 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국가 월 소득 (2017년 : 4,271.51 zlotys)의 60%
- 사회부조제도 : 해당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, NDC, NDC 및 개인계좌
 - 최저보장연금 총 비용 부담; 육아휴직중이거나 출산 수당을 받고 있는 가입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실업상태인 대학졸업자를 위하여 연금보험료 납부; 개인계좌 기금은 납부하지 않음
- 사회부조제도 : 전액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기간이 25년(여자 20년) 이상인 65세(여자 60세) 도달자
 - 비기여기간*은 기여기간의 33.3%를 초과할 수 없음. 특수 위험직종 종사자는 수급연령요건 완화
 - * 자녀양육기간 또는 특정 급여 수급기간
 - 퇴직 전에 완전히 근로 중단해야 하며 이후 특정 조건 하에 다시 근로 가능할 수 있음
 - 조기연금 : 남성은 최소 가입기간 35년 이상 (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25년), 여성은 30년 이상 (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20년) 이상일 경우 정년보다 5년 일찍 수급 가능
 - 감액연금 : 남,녀 가입기간이 각각 20년, 15년 이상일 경우 지급
 - 월 최저 노령연금은 1,029.80 zlotys (2018년 1월 기준)
 - 간호수당 : 75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
- 노령연금(NDC)
 - 가입기간이 1일 이상인 65세(여자 60세) 도달자
 - 최저보장연금 : 가입기간이 25년 (여성의 경우 20년) 이상인데 NDC 노령 연금액이 월 최저 노령연금에 미달할 경우 지급
 - 월 최저 노령연금은 1,029.80 zlotys (2018년 1월 기준)
- 노령연금(NDC 및 개인계좌)
 - 가입기간이 1일 이상인 65세(여자 60세) 도달자

- 최저보장연금 : 가입기간이 25년 (여성의 경우 20년) 이상인데 NDC 노령 연금액 및 개인계좌연금이 월 최저 노령연금에 미달할 경우 지급
- 월 최저 노령연금은 1,029.80 zlotys (2018년 1월 기준)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완전장애(모든 근로 불능) 또는 부분장애(소득능력을 현저히 상실하거나 일상근로가 완전 불능)상태에 있는 자로서 장애발생 이전 최종 10년 중 근로기간이 5년 이상(30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간 1년~4년)이며 총 가입기간이 25년(남자), 20년(여자)인 경우 지급,
 - 비기여기간*은 기여기간의 33.3%를 초과할 수 없음.
 - * 자녀양육기간 또는 특정 급여 수급기간
 - 장애는 보험가입 중 또는 보험료 납부 중지 후 18개월 이내에 발생했어야 함 (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남자 25년, 여자 20년인 경우 조건 면제됨)
 - 부분장애연금 : 부분장애인 경우 지급(소득능력을 현저히 상실하거나 일상근로가 완전 불능)
 - 간호수당 : 근로에 대해 완전장애자로 판정되었으며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자에 지급
 - 훈련연금 : 일상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.
- 장애연금(사회부조) : 18세 이상이며, 18세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였거나 정규 학생이며, 완전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이었거나, 장애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었을 경우 지급
 - 수급권자
 - 가입자의 사망 당시, 배우자가 50세 이상 또는 근로불능이거나 1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(학생인 경우 연령조건 18세), 또는 16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(학생인 경우 연령조건 25세)
 - 이혼한 배우자는 미망인(홀아비) 조건을 충족하는 이혼수당에 대한 수급권이 있는 경우
 - 16세 미만 피부양 자녀(학생인 경우 연령조건 25세, 16세 이전 혹은 학생인 경우 2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령제한 없음)
 - 미망인(홀아비) 조건을 충족하는 피부양 부모
 - 장제비 : 가입자, 연금수급자 또는 그들의 가족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

- 급여는 EU, EEA, 폴란드와 양자협정 체결한 국가만 해외지급 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기본금액의 24% + (가입자 소득의 1.3% × 보험료 가입연수) + (가입자 소득의 0.7% × 비기여연수)
-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: 청구인의 연금 청구 직전 20년 중 선택한 연속 10년 간 또는 청구인의 총 가입기간 중 선택한 20년간의 기준소득월액, 이전 소득은 물가에 따라 조정됨
- 기본금액 : 3,731.13 zlotys (2018년 1월 기준)
- 납부연도별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한액은 전년도 기본금액의 250%임
- 연금최저액 : 월 1029.80 zlotys (2018년 1월 기준)
- 연금최고액 : 월 3731.13 zlotys (2018년 1월 기준)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, 최저액 없음
- 감액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, 최저액 없음
- 최저보장연금 : 노령사회보험연금과 법정 최저노령연금 차액을 지급
- 법정 최저노령연금 : 월 1029.80 zlotys(2018년 1월 기준)
- 간호수당 : 월 208.67 zlotys
- 소득조사 : 퇴직연령 미만으로, 국가 월 평균임금의 70% 이상 130%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됨, 가입자의 소득이 130% 초과 시 연금급여 중단.
- 국가 월 평균임금 : 4,271.51 zlotys (2017년 기준)
- 연금액 조정 : 전년도 소비자물가 및 서비스 연간 지수, 전년도 평균 월 국가 평균임금 실제 성장률의 20%로 추가 조정됨

• 노령연금(NDC)

- 총 납부액, 지수에 따라 조정된 연금액, 그리고 조정된 초기 자본금을 가입자 퇴직연령 기준 평균기대여명으로 나눈 액수로 산정됨
- 조정된 초기 자본금은 1999년 1월 이전에 사회보험제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
- 최저보장연금 : NDC 노령연금과 법정 최저노령연금의 차액 지급
- 법정 최저노령연금 : 월 1029.80 zlotys

• 개인계좌 : 개인계좌 잔고를 정년 기준 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 지급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완전장애연금 : 구제도의 노령연금과 동일
- 기본금액의 24%+(가입자 소득의 1.3%×보험료 납부연수)+(가입자 소득의 0.7%×비기여연수)(ex.자녀 양육기간)+(가입자 소득의 0.7%×(청구일로부터 60세 도달일까지 최대 가입기간(25년)에 필요한 예상 연수)
-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 : 청구인의 연금 청구 직전 20년 중 선택한 연속 10년 간 또는 청구인의 총 가입기간 중 선택한 20년간의 기준소득월액, 이전 소득은 물가에 따라 조정됨
- 기본금액 : 3,731.13 zlotys (2018년 1월 기준)
- 납부연도별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한액은 전년도 기본금액의 250%임
- 소득조사 : 퇴직연령 미만으로, 국가 월 평균임금의 70% 이상 130%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됨, 가입자의 소득이 130% 초과 시 연금급여 중단
- 국가 월 평균임금 : 4,271.51 zlotys (2017년 기준)
- 정년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전환됨
- 연금최저액 : 완전장애의 경우 월 1029.80 zlotys (2018년 3월 기준)
- 부분장애연금 : 장애 연금액의 75% 지급
- 간호수당 : 월 323.76 zlotys(2018년 3월 기준)
- 훈련연금 : 장애연금 산정하기 위한 기준 소득의 75%(최장 6개월 동안 지급; 특정한 경우 최장 30개월 지급가능)
(월 최저액 : 부분장애연금 최저 월액의 100%)
- 연금액 조정 : 전년도 소비자물가 및 서비스 연간 지수, 전년도 평균 월 국가 평균임금 실제 성장률의 20%로 추가 조정됨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장애기간 동안 월 856.03 zlotys 지급 (완전장애의 경우 최저 월 연금액의 84%)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유족급여 : 유족의 수에 따라 사망한 가입자가 수급하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유족연금 균등 지급; 유족이 1명인 경우 연금액의 85%, 2명인 경우 90%, 3명 이상인 경우 95% 지급
 - 소득조사 : 퇴직연령 미만으로, 국가 월 평균임금의 70% 이상 130%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됨, 가입자의 소득이 130% 초과 시 연금급여 중단
 - 국가 월 평균임금 : 4,271.51 zlotys (2017년 기준)
 - 연금최저액 : 월 1029.80 zlotys
 - 연금액 조정 : 전년도 소비자물가 및 서비스 연간 지수, 전년도 평균 월

국가 평균임금 실제 성장률의 20%로 추가 조정됨

- 장제비 : 최대 4,000 zlotys 일시금 지급됨

7.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사회정책부(Ministry of Family, Labor and Social Policy)
 - 제도 전반적 감독
 - <http://www.mps.gov.pl>

- 사회보험청(ZUS : Social Insurance Institution)
 - 사회보험/NDC 운영/수금
 - <http://www.zus.pl>

- 폴란드 금융감독기구 (Polish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)
 - <http://www.knf.gov.pl>
 - 개인계좌 기금 감독
 - 개인계좌는 각 운영사에서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